제212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1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5~52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5~53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5~54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5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5~56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5~57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2015~58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15~59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15~60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15~61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015~62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2015~6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2015~64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77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52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1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행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 개정 :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사회보장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상근간사 → 직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규정(안 제5조)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 2천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7. 10. ~ 7.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의료급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영유아보육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군수는 각 읍・면사무소에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⑦ 군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 성 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동 순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53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15. 7. 1.)이 개정·시행되어,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나「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271,838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개혁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7. 22. ~ 8.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배율(10%)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에 의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의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국비	218	240	264	288	320	1,330
	도비	27	30	33	36	40	166
	군비	27	30	33	36	40	166
	소계(a)	272	300	330	360	400	1,662
세입	국비	218	240	264	288	320	1,330
	도비	27	30	33	36	40	166
	군비	0	0	0	0	0	0
	소계(b)	245	270	297	324	360	1,496
총 비 용(a-b)		27	30	33	36	40	166

3. 관련 의견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도모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동 순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54

제출년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 기 능 : “심의” ⇒ **“협의 · 조정”**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부군수”**

위 원 :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군수가 위촉한 사람

○ 위원장 직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장)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7. 22. ~ 8.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8조제2항 중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하며,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6조를 제21조 및 제23조로 하며, 제21조(기존의 제24조) 중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9조”로 하고, 제20조와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22조(준용)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주민생활지원실장·행정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삭 제>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② 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지정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군수는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센터의 지리적 위치, 사업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방문교육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⑤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개별통지하고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통지 후 2주일 내에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기간 및 지정취소) 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운영위탁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삭 제>
제22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삭 제>
제23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22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보칙	제4장-----
<신 설>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2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1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3조부터 제19조----------
제25조(민간과의 협력)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22조(준용)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55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668명 ⇒ 670명(증 2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2명

- 현행 : 596명(본청274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 598명(본청276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68,000천원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6. 12. ~ 15. 7. 0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668명”을 “6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4명”을 “65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6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5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670명---------- ---------- 1. ----------656명 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0 ~~668~~	293 ~~291~~	14	128	65	63	51	37	147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37 ~~635~~	290 ~~288~~	14	100	37	63	49	37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8 ~~596~~	276 ~~274~~	11	94	33	61	45	36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국비						
	군비	68	70	72	75	78	363
	소계(a)	68	70	72	75	78	363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 용(a-b)		68	70	72	75	78	363

3. 관련 의견

○ 재난안전 조직강화를 위한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증원 내역 : 7급 1명, 8급 1명

○ 연간 인건비 증가액 : 68,000천원

- 기본급 40,000천원, 수당 등 28,000천원

작성자 : 행 정 과 장 이환철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56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가조면 도리(10필지 342,671㎡) 일부

: 도리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

⇒ 가조면 석강리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6. 19. ~ 7. 09.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조면 석강리와 도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조 면	석 강 리	종래 석강리 일원,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 및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을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
	도 리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를 제외한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거 창 읍	상 림 리	종래 상동 일원, 종래 송정리 일원 중 225-2, 1059-2~1059-35번지 및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7-1번지
	중 앙 리	종래 하동 일원
	대 동 리	종래 동동 일원
	대 평 리	종래 중동 일원 중 대평리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김천리 일원 중 46, 47-2번지
	김 천 리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46, 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래 대평리 일원 중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
	송 정 리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산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1004~1047, 1085~1087, 225-2, 1059-2~1059-35번지를 제외한 지역
	정 장 리	종래 정장리 일원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6~1638, 1642-1~1642-7, 1647-2번지
	장 팔 리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406-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 1635번지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거 창 읍	서 변 리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1147-60, 1147-62, 1147-63, 1147-69~1147-82, 1147-84~1147-96, 1147-99~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1147-122, 464-1~464-3, 464-5, 464-6, 465-1, 480-1, 481-1~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학리 1047-4, 1047 -31번지와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
	동 변 리	종래 동변리 일원
	학 리	종래 학리 일원 중 1047-4, 1047-3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1147-60, 1147-62, 1147-63, 1147-69~1147-78, 1147-82, 1147-84~1147-94, 1147-99, 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1147-122, 464-1~464-3, 464-5, 464-6, 465-1, 480-1, 481-1~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
	양 평 리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1147-79~1147-81, 1147-95, 1147-96, 1147-100, 1147-101번지
	가 지 리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3-7번지를 제외한 지역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주 상 면	도 평 리	종래 도평리 일원
	연 교 리	종래 연교리 일원
	내 오 리	종래 내오리 일원
	완 대 리	종래 완대리 일원 및 종래 농산리 일원 중 1939~1950번지
	성 기 리	종래 성기리 일원
	거 기 리	종래 거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웅 양 면	동 호 리	종래 동호리 일원
	죽 림 리	종래 죽림리 일원
	노 현 리	종래 노현리 일원
	산 포 리	종래 산포리 일원
	군 암 리	종래 군암리 일원
	신 촌 리	종래 신촌리 일원
	한 기 리	종래 한기리 일원
고 제 면	농 산 리	종래 농산리 일원 중 1939~1950번지를 제외한 지역
	개 명 리	종래 개명리 일원
	봉 산 리	종래 봉산리 일원
	봉 계 리	종래 봉계리 일원
	궁 항 리	종래 궁항리 일원
북 상 면	갈 계 리	종래 갈계리 일원
	소 정 리	종래 소정리 일원
	농 산 리	종래 농산리 일원
	병 곡 리	종래 병곡리 일원
	산 수 리	종래 산수리 일원
	월 성 리	종래 월성리 일원
	창 선 리	종래 창선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위 천 면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상 천 리	종래 상천리 일원
	강 천 리	종래 강천리 일원
	황 산 리	종래 황산리 일원
	당 산 리	종래 당산리 일원 및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
	모 동 리	종래 모동리 일원
마 리 면	영 승 리	종래 영승리 일원
	율 리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를 제외한 지역
	월 계 리	종래 월계리 일원
	말 흘 리	종래 말흘리 일원
	고 학 리	종래 고학리 일원
	대 동 리	종래 대동리 일원
	하 고 리	종래 하고리 일원 및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산1004 ~ 산1047, 1085~1087번지
남 상 면	춘 전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 일원
	진 목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진목리 일원
	둔 동 리	종래 둔동리 일원
	오 계 리	종래 오계리 일원
	무 촌 리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1638, 1642-1~1642-7, 16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406-4번지
	송 변 리	종래 송변리 일원
	대 산 리	종래 대산리 일원 및 종래 월평리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번지
	월 평 리	종래 월평리 일원 중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번지를 제외한 지역
	전 척 리	종래 전척리 일원
	임 불 리	종래 임불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남 하 면	둔 마 리	종래 둔마리 일원
	양 항 리	종래 양항리 일원
	무 릉 리	종래 무릉리 일원
	대 야 리	종래 대야리 일원
	지 산 리	종래 지산리 일원
신 원 면	수 원 리	종래 수원리 일원
	양 지 리	종래 양지리 일원
	구 사 리	종래 구사리 일원
	과 정 리	종래 과정리 일원
	덕 산 리	종래 덕산리 일원
	청 수 리	종래 청수리 일원
	중 유 리	종래 중유리 일원
	대 현 리	종래 대현리 일원
	와 룡 리	종래 와룡리 일원
가 조 면	석 강 리	종래 석강리 일원,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 및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을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조 면	기 리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
	대 초 리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를 제외한 지역
	동 례 리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
	사 병 리	종래 사병리 일원
	마 상 리	종래 마상리 일원
	수 월 리	종래 수월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조 면	일 부 리	종래 일부리 일원,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
	도 리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를 제외한 지역**
가 북 면	우 혜 리	종래 우혜리 일원
	박 암 리	종래 박암리 일원
	몽 석 리	종래 몽석리 일원
	용 암 리	종래 용암리 일원
	중 촌 리	종래 중촌리 일원
	해 평 리	종래 해평리 일원
	용 산 리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5 ~ 57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 수행 지원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의 용어의 뜻을 정함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로 하고,

○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출동비, 방범초소 유지 및 관리 비용

○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예산 목적 외 사용 지도 및 감독

○ 연중 활동 실적 평가 및 반영

라. 포상,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공적 포상

○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교육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및 별표 12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방범대 운영비 : 16개대 연간 2,400천원 (총38,400천원) / 일반보상금

○ 연합회 체육대회 : 4,000천원 / 민간행사 보조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6. 22. ~ 7. 1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군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와 연합회로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 구입비 등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출동비
2. 방범초소 유지 및 관리 비용
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율방범대와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방범 활동 추진에 따른 운영비, 장비 구입비 등 발생

○ 관련조문 : 제6조(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국비						
	군비	42.4	52.4	62.4	42.4	42.4	242
	소계(a)	42.4	52.4	62.4	42.4	42.4	242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 용(a-b)		42.4	52.4	72.4	42.4	42.4	252

3. 관련 의견

○ 원활한 자율방범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순찰활동 추진을 위해 비용 추가로 요구됨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매년

- 자율방범대 운영비 : 총38,400천원(16개대, 각 2,400천원)
- 연합회 체육대회 : 4,000천원

○ 장비구입비(2016년) : 10,000천원

- 무전기, 방범 초소 소요물품 구입 등

○ 방범복 구입비(2017년) : 15,000천원

※ 2013년 지원 : 15,000천원

작성자 : 행 정 과 장 이환철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58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1조제3항)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출서류 삭제(안 제13조제1항)

○ 삭제 : 상생협력사업계획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13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기존의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로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② (생 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 4. (생 략)	④ ----------지정·변경 또는 취소---------- 1. ---------- 2. ----------지정·변경 또는 취소---------- 3.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59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실버레포츠타운 시설 준공에 따른 각종 시설별 사용료 기준마련 및 군정시책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항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기준 추가함(안 별표)

○ 다목적구장,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골프장 신설함

나. 사용료 경감조항 추가함(안 제15조제2항·제4항)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주관행사 시 80퍼센트 경감

○ 수영장 이용 월 회원 중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퍼센트 경감

다. 상위법령 위반 등 정비대상 조항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제24조제3항)

○ 사용허가 및 위탁 취소 시 손해배상 관련 규정 삭제

라.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조항 삭제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6. 10. ~ 2015. 6.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본문 및 제1호·제2호·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기존의 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그린카드 이용자에게는”으로 “감면”을 “경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기존의 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이”를 “사용이 취소 또는”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2. ---------- 3. ---------- 4. ---------- <삭 제>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④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경우와 그린 카드 이용자에게는**-------**경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4. ~ 5.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반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용이 취소 또는**----------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삭 제>**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 ② (생 략)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5조(준용) ① (생 략)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준용)** (현행과 같음) **<삭 제>**

[별 표]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신설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신설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료**		신설
		소규모공연		**무료**		신설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파크골프장				**무 료**		신설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신설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0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점용료 부과 금액이 5,000원 미만인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혜택 제공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납부 후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부과를 해소

2. 주요내용

가. 5,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나.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4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 ---------- ---------- ② ---------- ---------- ---------- ----------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분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1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조례 시행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제4항)

나.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의 증축 시 인근주민의 6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다. 인용 법 조문 및 조례명을 수정함(안 제6조, 제7조, 별표 1)

○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법 제24조 ⇒ 법 제25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2조 ⇒ 제12조,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4조제2항제5호)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한다.

1. 변경·해제의 근거
2.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적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

제6조제6항 중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24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1 전부제한구역 란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한다. 1. 변경·해제의 근거 2.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생 략)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 사육시설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구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적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
6.~ 7. (생 략)	6.~ 7. (현행과 같음)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 ⑤ (생 략)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⑥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처리범위 등) ① (생 략)	제7조(처리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법 제25조----------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2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에 농업인등이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고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나.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조항 삭제(안 제7조)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완공에 맞춰 개별조례 제정

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특례 신설(안 제7조, 별표)

○ 건축물 위치, 구조, 작업장,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 특례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1호자목4)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등(안 제3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별표 14 제1호자목4))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민원봉사과(위생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완화(안 제7조, 별표)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식품위생법」제36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것
   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를 농가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감시와”를 “지도·감독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에”를 “「식품위생법」 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의 특례) 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하는 가공사업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것 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를 농가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② ----------지도·감독과-----------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위생법」 또는 제7조에서 군수가----------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군민의 역할) ①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소비자단체회원으로 참여하여 농가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역할) ① <삭 제> ---------- ---------- ----------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등) 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가.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1호 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3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과 및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안 제17조제2호)

○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신고량

⇒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안 제23조)

○ 제반 ⇒ 모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27조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3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조례시행규칙”을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나목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을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을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영”을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 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삭 제>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사용신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사시행) ① (생 략) 1. (생 략)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1조(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하수도법 시행규칙」**----------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 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생 략)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 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② (생 략)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1. -------**「하수도법 시행령」**----------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모든**---------- ③ (현행과 같음)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4

제출일자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

○ 주민공동이용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

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 도서관, 농업 박물관

○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1,571백만원 기 확보(건설과)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건설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6. 15. ~ 7.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도서관, 농업 박물관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건축물 및 시설물 조성 등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

1. 도서관, 농업박물관 /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국비	477	625	1100	700	598	3,500
	도비	61	80	141	90	78	450
	군비	143	188	330	210	179	1,050
	소계(a)	681	893	1,571	1,000	855	5,000
세입	국비	477	625	1100	700	598	3,500
	도비	61	80	141	90	78	450
	소계(b)	538	705	1,241	790	676	3,950
총 비 용(a-b)		143	188	330	210	179	1,050

※ 건설과 권역단위정비사업에 예산 편성 및 집행

3. 관련 의견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 장치를 마련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경 기